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1. 2.
운영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: 2022년 10월 21일
- 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2022. 10. 31.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)
- 사무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- 사무국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관련, 팀 신설 등의 개정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0월

발의자 : 유승용, 남완현, 우경란,
김지연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팀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, 구의회사무국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규칙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사무국 사무분장 (안 제2조)
- 다. 사무국 하부조직 (안 제3조)
- 라. 전문위원 사무분장 (안 제4조)
- 마. 정책지원관 사무분장 (안 제5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
전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.)의 사무분장과 하부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분장)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수행한다.

1.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에 관한 사항
2. 의회 행사 및 의전 등에 관한 사항
3. 의원 등록과 기록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4. 의원의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
5. 사무국 조직관리 및 재무회계
6.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
7. 의회의 예산 편성·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

8. 문서, 보안, 관인·공인 관리
9. 의회 청사, 시설장비, 물품수급 및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
10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1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
12. 각종 회의록 작성, 발간, 배부, 보존관리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
13. 각종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 등에 관한 사항
14.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
15.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
16. 회의장 방청,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
17. 청원, 진정서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18. 의회 홍보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
19. 의회 홍보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
20. 의회 홈페이지 관리
21.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회의의 녹화, 녹음 관리
22.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하부조직)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, 의사팀, 홍보팀, 정책지원팀을 둔다.

제4조(전문위원)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.

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소관 위원회의 조례안, 예산안, 청원 등에 대한 검토 보고
2. 소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
3. 소관 위원회 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공
4. 그 밖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소속위원장의 요청사항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③ 정책지원관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
2.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
3.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작성
4. 토론회, 공청회, 세미나 등 운영 및 지원
5. 주민·전문가 의견수렴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